

#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첫째, 산재근로자의 피해를 충실히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산재보험은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법률상 청구권이 부여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산재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피해에 대한 책임자를 확정하는 어려움이 면제되며, 책임자의 책임능력과 관계없이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산재보상책임은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한다.

셋째, 산재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산재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용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신, 반대급여로서 지급되는 산재보상이 사용자에게는 자기기여에 의한 보상의 성격을 갖게 되며, 산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면제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1. 건설업 중 제8조제2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금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신고한 공사금액에서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건설업 및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총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다.
  - ③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
  -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하는 해당 보험연도는 제18조의2에 따른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개별실적요율

개별실적요율이란?

보험가입자의 개별위험을 과거의 손해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매뉴얼요율을 조정하는 요율제도

이처럼 보험가입자나 보험대상의 개별위험을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미래에도 이러한 개별위험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여 등급요율을 조정

개별실적요율은 모든 적용대상자에게 객관성이 높은 보험수지율(실적손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음.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기능

## 1) 사고 비용의 재분배 기능

- 과거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산재보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업종별 단일보험료 부담체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부담의 불공평성 완화
- 각각의 사업장은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경우 실제 위험발생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험등급으로 구분되고 이로 인해 동일한 보험요율 그룹으로 구분되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한다.
-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해발생률이 낮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동일한 업종에 속한 재해 발생율이 높은 사업주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산재보험료를 부담

## 2) 적정보험료율 유도효과

- 개별 사업주의 산재발생 위험도에 상응하는 것을 이상적인 보험요율이라 하지만 사전적으로 완벽히 위험을 분류하는 것은 정보상 한계가 있음
- 때문에 사후적으로 개별 사업주의 위험실현 결과를 통해 보험요율을 조정
- 즉, 새로 획득한 개별 사업주의 위험정보를 보험요율에 반영하여 적정보험요율의 책정을 유도

## 3) 개별실적요율제의 산재예방 효과

- 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율의 증감하는 것은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벌금을 부과하고, 발생시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의 경감 형태로 사후적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의미
- 때문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증가하고 산재발생률이 낮아서 보험요율이 낮아지는 경우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

## 4) 보험금청구 억지기능

- 보험금청구는 손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보험요율이 상승한다는 부담을 수반하게 됨
- 특히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즉,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보험요율 인상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할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사업주의 산재은폐유인을 강화하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음

## 사업종류별 개별실적요율 결정현황 (2016년 말 기준)

	징수대상 사업장수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수		최고요율	최저요율
			비율		
합계	1,947,458	164,975	8.47	442.00	3.50
금융, 보험업	12,544	3,357	26.76	9.80	3.50
광업	1,059	228	21.53	442.00	49.70
제조업	363,291	54,611	15.03	53.24	3.5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19	425	26.25	13.00	5.00
건설업	99,537	9,015	9.06	57.00	19.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59,647	7,814	13.10	82.17	4.50
임업	2,202	197	8.95	106.80	53.40
어업	1,723	19	1.10	36.00	21.00
농업	10,383	761	7.33	35.10	16.20
기타사업	1,395,453	88,548	6.35	41.60	3.50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주요 문제점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사업장에 50%의 할인율 및 할증률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오랜 기간 50% 할인을 적용받다가 재해가 발생하면 50% 할증을 적용받게 되어 보험료율이 3배 증가하는 문제가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뢰도 이론을 반영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할인, 할증 폭을 20%~ 50%로 차등화.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첫째,** 수지율 산정 시 산재나 직업병 발생 시점에 기초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출 시점에 기초하여 보험급여 포함여부 결정. 즉, 과거 3년의 준거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재해라도 준거기간에 보험급여가 발생하면 수지율 산정에 포함.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산재를 예방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이 수지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인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발생.**

**둘째,**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은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 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간주. 그 결과 실제로 발생하는 연금 지출액의 일부만 반영되며, 지급 결정 후 3년이 경과하면 수지율 산정의 보험급여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율이 산정되는 문제.

**셋째,** 직업재활급여,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 및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를 수지율 산정 시의 보험급여에서 제외. 그러나 보험료 수입 감소를 상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개별실적요율 미적용 사업장을 고려하면 문제.

**넷째, 대다수의 사업장이 할인을 적용받고 할증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일부에 불과하며,** 할인을 적용받는 사업장 비중이 증가. 할증을 적용받는 사업장보다 할인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과도하게 많으면서 할인 적용 사업장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칭 형태의 최대할인율과 최대할증률을 적용한 결과 평균 할인율이 평균 할증률보다 높다.

**다섯째,**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사업장과 미적용 사업장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 이는 증감율 산정을 위한 기준수지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근 달리 정하긴 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률적인 형태로 75%~85%의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할증이 적용되는 사업장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

**여섯째,**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다른 문제점으로 일부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체계적인 역진적 재분배가 발생.** 대기업이 같은 업종에 속해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으로 인해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에서 보험원칙에 따른 우연에 의한 재분배가 아니라 **사업장 규모별로 체계적인 역진적 재분배가 발생.**

**1**

**추진배경**

# ①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업재해는 점진적으로 감소

## ❖ '17년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17년	2016년	증감	증감율(%)
사고재해자수	80,665	82,780	△808	△0.9
사고재해율	0.43	0.45	△0.02	△4.4
업무상사고사망자수	964	969	△5	△0.5
업무상사고사망만인율	0.52	0.53	△0.0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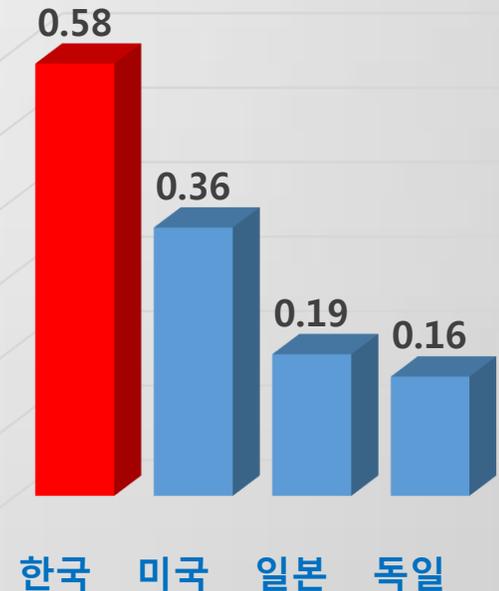
# ① 산업재해 발생현황

그러나 대형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정체

'03~'17년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



국제비교 ('14년, ‰)



## ① 산업재해 발생현황

특히 **외주화 확산**에 따른 하청 산업재해 증가

### ❖ 사고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중이 높음

사고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중('17) : 40.7%

업종별 : (제조업) 23.9%, (건설업) 56.6%, (기타업종)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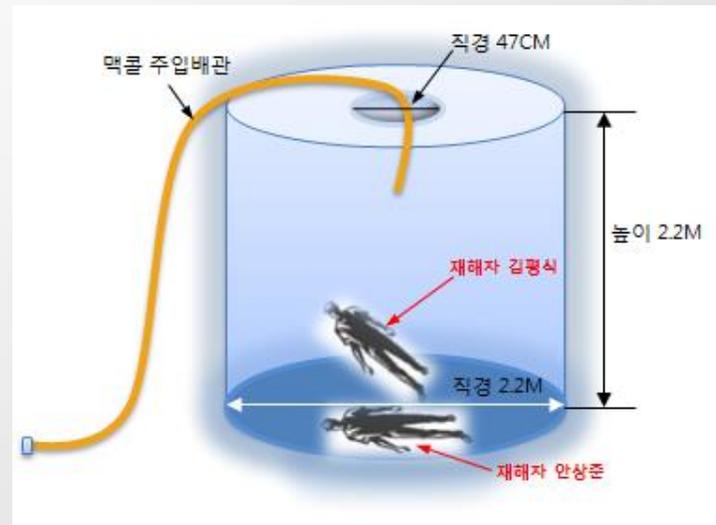
✓ 제조업 중 100인 이상 모기업 : 62.7%

## ② 최근 대형사고 사례

### 액체 사료 저장탱크 내 질식 사망



액체 사료 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저장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사망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교육 등 미실시



## ② 최근 대형사고 사례

### 물류센터 작업대 낙하사고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천장 작업대 이동 중  
작업대 낙하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 작업대 구조 불안정, 작업계획서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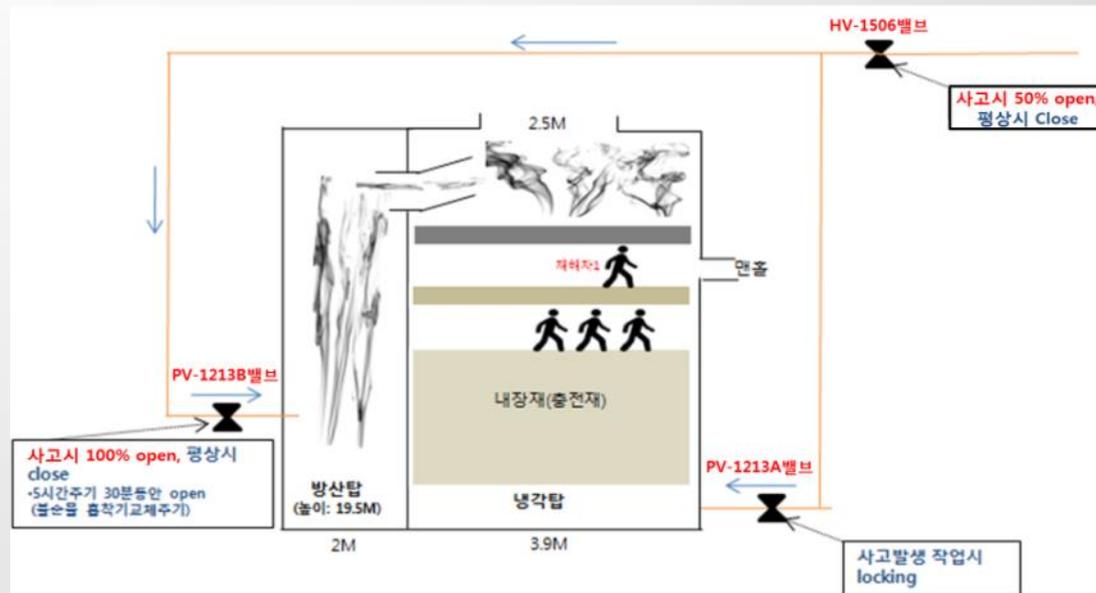


## ② 최근 대형사고 사례

### 하청업체 질식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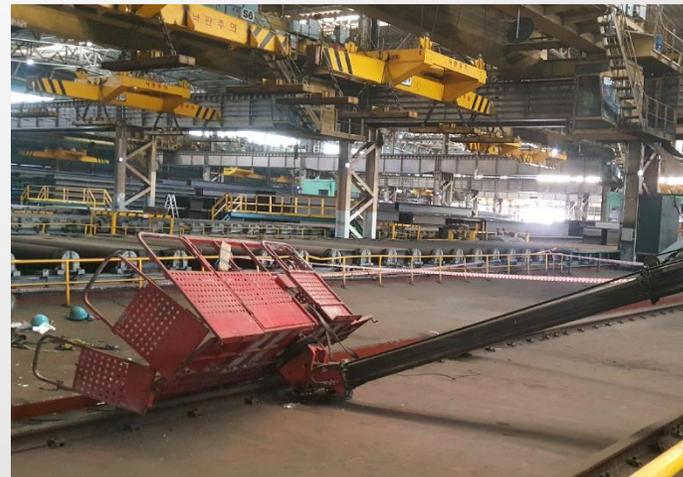
냉각탑 내부에서 충진제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냉각탑 내부로 유입된 질소에 의해 질식  
→ 냉각탑의 구조적 결함, 안전작업지시서 발행 절차 미흡



## ② 최근 대형사고 사례

### 고소작업대 턴테이블 볼트 파손에 의한 붕대 낙하사고

창고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천장 LED등 교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턴테이블 고정볼트 파단으로 붕대가 낙하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 방호장치 기능해제에 따른 과부하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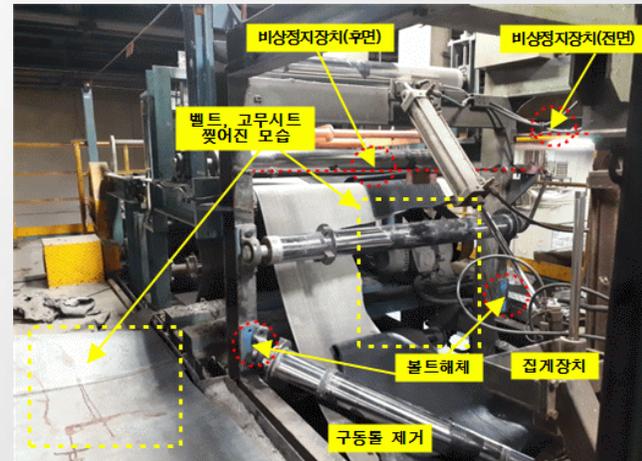


## ② 최근 대형사고 사례

### 벨트컨베이어 끼임사고



가동 중인 벨트컨베이어의 벨트 위에서 불량제품을  
손으로 들어올리던 중 벨트 사이에 끼여 1명 사망  
→ 비상정지장치 설치 위치 부적정, 설비 가동 중 작업



**2**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

## ① 목표설정

### □ 2022년까지 50%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 ▶ 지난 10년간 연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감소율 : 5.58%(0.87→0.52‰)
- ▶ OECD 국가 15개국 평균 사고사망만인율('14년 기준) : 0.3‰

#### <향후 5년간 공단의 사고사망만인율 감소목표>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고사망자수	964명	800명대	800명대	700명대	600명대	500명대
사망만인율(‰)	0.52	0.48	0.44	0.39	0.33	0.27
연간 감소율	-	8%	8%	11%	15%	18%

## ② 추진전략

□ 사고사망에서 가장 위험하고 효과창출이 가능한 핵심 기인요소 분석을 기반으로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대책'을 추진

✎ (3대 악성 사고사망 선정) 사고사망 발생형태 중심의 철저한 산재분석을 기반으로,

① 사고가 많이 나는 곳, ② 사업대상이 명확한 곳, ③ 사업내용(효과성)이 명확한

추락, 충돌 및 질식을 3대 악성 사고사망으로 선정

⇒ '권한을 가진 자와 책임이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단의 모든 인프라 집중

## ② 추진전략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핵심 주제인 추락, 충돌, 질식 등 3대 분야의 사업장 전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술·재정지원과 더불어 향후 5년간 안전보건 서비스의 집중과 책임자의 인식개선 병행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작업형태 및 노동자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인 '사업을 하는 사람(사업주)'과 '작업을 시키는 자(원청·지자체)'를 사업대상으로 집중

### ③ 추진전략 체계

##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 구현

목 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을 0.27‰ 달성  
- 2018년도 사고사망만인을 0.48‰ 달성 (전년대비 8% 감축) -

추진 전략

사고사망  
실태조사·분석

권한자의  
책임이행 지원

이해 관계자  
인식 내재화

### 3대 악성사고 근절, 2대 주체 책임 규명 강화

3 대  
악성사고

추락

충돌

질식

대형  
화학사고

세부 추진 과제

2 대  
주체

- ①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
- ②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 위험등급별 관리
- ③ 지게차작업 안전관리 체계화
- ④ 질식 3대 위험영역 집중관리
- ⑤ 지자체 4대 위험작업 사고사망예방
- ① 노후 화학설비 위험실태조사·위험관리

사업주  
(원청)

지자체

지원  
과제

분위기 조성

주체별 홍보/단계별 교육을 통한 임직원 역량강화

허브강화

민간 위탁·전문기관 활용한 사고사망예방 추진

# 3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 ① 최근 제·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00명(2019년은 1,0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운송업 등의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 ☞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적용

## ① 최근 제·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 도급인에게 질식 등 작업 시 수급인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부여

#### ❖ 도급인의 정보제공 대상 작업 구체화

화학물질 제조 등을 하는 설비의 개조 등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구체적인 작업대상 정함

-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행하여지는 작업

## ① 최근 제·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 도급인의 안전조치 이행 확대

#### ❖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추가

\*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법의 보호대상 및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 ❖ 최근 변화된 사용실태에 맞게 보호대상, 법의 목적 확대

- ✓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고객응대근로자 등 보호 의무 부여
- ✓ 사업주의 정의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변경

#### ❖ 위험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자의 책임 확대

-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 ✓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이행 의무 확대
- ✓ 도급인의 정보 미제공 시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 개시를 연기할 수 있고, 지체 책임 면제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위험의 외주화 및 중대재해 재발 방지 강화

#### ❖ 도급 제한 강화

- ✓ 도급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
- ✓ 건강장해, 중독 위험이 있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설비 관련 작업은 **고용부 장관 승인 필요**
- ✓ 도급 승인 작업의 **하도급 금지**
-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에게 도급해야 함**

#### ❖ 중대재해 재발방지 조치 강화

- ✓ 근로자 사망에 따른 법정형 중 **징역형에 하한을 신설**하고 법에 대한 벌금형 가중
-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처벌 수준 상향**
- ✓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도입**

## ② 최근 제·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주요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사고 포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산재보험료율의 특례 적용 사업 변경

기업규모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 대기업에 유리한 보험료 할증·할인 대상에서 공사금액 60억원 미만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을 제외하여 보험료 할인·할증 폭을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THANK YOU**